

중국, 대만, 일본, 한국의 무역분쟁처리제도와 상사중재실태에 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Trade Dispute Resolution System and the
Commercial Arbitration of China, Taiwan, Japan and Korea

최 장 호**

- I. 머리말
- II. 중국, 대만, 일본, 한국의 무역분쟁처리제도
- III. 중국, 대만, 일본, 한국 상사중재의 제도화
- IV. 중국, 대만, 일본, 한국의 상사중재실태
- V. 맺음말

I. 머리말

중국, 일본, 대만은 한국과 더불어 아시아의 주요 무역대국으로 일본과 중국은 근래 또한 한국의 3대 주요교역대상국중의 한나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 또한 이들 여러 나라의 주요교역대상국이 되고 있다. 이들 여러 나라들은 모두 한자문화권에 있는 유교적전통의 문화와 풍토가 동질성을 띄고있는 아시아의 주요국가들로서 이들 여러 나라사이의 무역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 연구는 1997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한편 한국과 이들 여러 나라와의 무역거래가 증가됨에 따라 이들 나라와의 무역분쟁도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 여러 나라의 무역분쟁처리시스템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중국, 대만, 일본, 한국은 모두 무역클레임을 처리하기 위한 법규, 기구 등의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상사중재제도의 근대화와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이미 이를 위하여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국제상사중재모범법을 참고, 수용하여 새로운 중재법을 제정하고 1995. 9. 1.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만, 일본도 중재제도의 국제화를 위하여 위 모범법을 참고하여 중재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중재법규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또한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 국제상사중재모범법을 자국의 중재법에 반영시키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여 중재법의 개정검토와 중재법개정시안의 작성, 연구등 중재법개정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아시아의 무역대국으로 여러 측면에서 문화와 풍토의 동질성을 갖고있는 중국, 대만, 일본 그리고 한국 등 4개국의 분쟁처리시스템과 중재시스템의 발전과 이용실태 등 상사중재현황을 조사, 파악하고 비교연구하며 우리나라 상사중재시스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보고자한다.

II. 중국, 대만, 일본, 한국의 무역분쟁처리제도

1. 중국의 무역분쟁처리제도

중국과의 경제무역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다.

첫째, 당사자 스스로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

둘째,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방법

셋째, 경제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방법

넷째,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는 방법이다.¹⁾

경제중재기관의 중재에는 국내중재와 섭외중재가 있다. 이중 국내중재에는 경

1) 한국무역협회, 「대중국교역 및 투자안내」, 1994, p.201. 참조

제계약중재, 노동중재, 기술계약중재, 소비중재, 저작권중재, 부동산중재 등이 있으며 섭외중재에는 국제경제무역중재와 해상중재가 있다.²⁾ 섭외중재로 빈번히 이용되는 것은 국제무역중재이다.³⁾ 중국의 섭외중재는 조정과 중재를 긴밀히 결합하는 특징을 지닌다. 중국에서는 국내분쟁은 물론 섭외분쟁도 일차적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해결하고 이차적으로는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⁴⁾

옛 중국에는 자체 섭외중재기구라는 것은 없었다. 만약 중재방법으로 섭외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중재기구에 중재신청을 하여야 하거나 외국에서 임시중재법정을 구성하여야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에는 미국이 중국의 무역을 통제하게 되었다.⁵⁾ 미국은 자국의 경제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중재협회와 중국국민당정부는 공동으로 “중미상사연합중재위원회”를 설립하여 중재규칙을 제정하였다. 그 당시 중미간의 협의에 따르면 중미간에 발생한 무역분쟁은 모두 이 연합중재위원회에서 중재규칙에 의하여 중재하여야 하였으며 이 위원회의 26명의 구성원중 20명이 미국인이고 중국인은 6명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중재기구와 중재규칙은 半殖民地性格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⁶⁾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하기 이전 대외경제무역중재면에서 중국은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중재기구가 없었으므로 무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외국에 가서 중재할 수 밖에 없었다.⁷⁾ 신중국건립이후 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민간기구로서 서방국가와의 경제왕래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가교역할을 하였다.

중국과 서방국가와의 경제무역거래에 따라 분쟁도 발생하게 되었다. 그 당시 중국에는 전문적 섭외중재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외국에서 중재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중국섭외중재기구의 설립은 객관적수요라고 할 수 있었다.⁸⁾ 그리하여 중앙정부정무원(현 국무원)은 1954. 5. 6. 제215차 정무회의에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내 대외무역중재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하는 중앙인민정부정무원의 결정을 가결하고 대외무역중재위원회의 수리범위, 조직, 임무 및 중재절차 등 내용에

2) 陳桂明, 「仲裁法令」, 中國政法大學出版社, 1992, p.184.

3) 손한기, “중국중재제도의 일고찰”, 「중재학회지」, 제3권, 한국중재학회, p.108.

4) 上揭書, p.108.

5) 王存學, 「中國經濟仲裁和訴訟實用手冊」, 中國發展出版社, 1993, p.82~83.

6) 上揭書, p.83.

7) 陶春明·王生長編, 「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 人民中國出版社, 1992, p.1.

8) 上揭書, p.2.

대하여 원칙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로서 중재가 국제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게 되었다. 정무원의 결정에 따라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1956. 3. 31. 제4차위원회에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대의무역중재위원회 중재절차잠행규칙」을 가결하였다.

대의무역중재위원회중재절차잠행규칙에 따라 대외무역중재위원회에서 수리한 안건의 범위는 대외무역계약 및 교역에서 발생한 분쟁, 특히 외국상사, 회사 또는 경제조직과 중국상사, 회사 또는 기타 경제조직간에 발생한 분쟁도 접수하고 아울러 외국상사, 회사 또는 기타 경제조직간에 발생한 분쟁도 접수하였다.⁹⁾

대의무역중재위원회는 1980년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로 개칭되고 그후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로 변경되었다.

2. 대만의 무역분쟁처리제도

대만에서는 무역분쟁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서의 규정과 관계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며 다음의 4가지 방법으로 무역분쟁해결방법을 구별할 수 있다.

- 첫째, 관계당사자간의 타협으로 해결하는 방법
- 둘째, 국제적인 중재기관을 통하여 중재로 해결하는 방법
- 셋째, 법원에 타방당사자를 제소하여 해결하는 방법
- 넷째, 무역관계기관의 알선으로 해결하는 방법 등이다.

오늘날 모든 선진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직접 무역분쟁에 개입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만정부도 자유무역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상이의 정당한 영업활동에 간섭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대만정부는 수출을 촉진하고 해외에 상업적명성을 고양하기 위하여 무역업자들에게 특별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무역분쟁에 관한 업무의 처리와 조정을 위한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경제부국제무역국 (The Board of Foreign Trade)을 지정하였다. 그런 위임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국은 무역분쟁을 다루는데 있어서 사법적집행력도 없으며 재판할 권한도 없다. 그것은 다만 조정에 의하여 분쟁을 처리하는 전문적인 행정조직으로써만 활동한다.¹⁰⁾

9) 上掲書, p.3.

10) 채완병, “자유중국무역분쟁과 처리”, 「중재」, 제152호, 대한상사중재원, 1984, p.29.

한편 무역법제26조는 “수출업자는 성실신용원칙으로 중재, 조해(調解) 혹은 화해절차를 이용하여 무역분쟁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은 국제무역분쟁을 중재제도로 해결하도록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고 하였다. 해상법제161조는 “공동해손의 계산은 전체관계인의 협의로 결정하며 협의가 안될 경우 항정기관(航政機關)¹¹⁾에 조정(調停) 아니면 상무중재위원회에 중재 혹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외선물교역법제34조도 “본법에 의하여 발생한 유가증권교역의 분쟁은 만약 당사자들이 중재하기로 약정하였으면 중재장소는 중화민국국내에서 하도록 한다.” 고 하고 있다. 또한 특허법 제10조는 “고용자와 피고용자는 제7조와 제8조의 권리귀속의 분쟁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증명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허책임기관에 채권자명의를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특허책임기관은 필요시 당사자에게 기타 법령으로 취득한 조해, 중재 혹은 판결문서를 첨부하도록 통지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강제중재의 규정도 있다. 기술합작조례제8조는 “기술합작으로 하여 분쟁발생시 쌍방이 동의한 중재방식으로 중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며 증권교역법 제166조제1항의 단서는 “증권상과 증권교역소가 아니면 증권상사이에 본법에 의거하여 발생한 유가증권교역의 분쟁은 당사자간에 중재계약유무를 막론하고 모두 중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다.¹²⁾

행정원경제개혁위원회는 1985년 10월에 「무역분쟁처리방식의 개진 및 중재제도의 강화방안」 을 가결하였으며 1986년 9월에 법무부에 지시하여 사법원, 내정부, 외교부, 경제부 및 국무부(國寶部)등 대표들로 하여금 「중화민국 상무중재협회회무업무재무감독소조」 를 구성하였다. 내정부는 1989년 6월 19일 대만 제709046번문서로 각기관건설사업의 계약내용에 건설사업의 분쟁해결방법으로는 중재방식이 중요한 방법이라고 명시하도록 통지하였다.¹³⁾

3. 일본의 무역분쟁처리제도

무역분쟁의 해결방법은 화해, 알선, 조정, 중재, 소송의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무역클레임의 경우에는 태반이 직접교섭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다. 구체적으

11) 우리나라의 해운항만청에 해당함.

12) 高瑞錚, “現行商務仲裁制度 實務的 運營上의 缺如 및 改進”, 「商務仲裁制度研討會實錄(2)」, 法務部, 1995, p.13.

13) 上揭論文.

로는 양당사자간의 직접상담에 의하여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재에 부탁하는 취지를 서로 상의하는 것이 보통이다.¹⁴⁾

일본에서는 1890년 명치민사소송법제정이래로 중재는 소송대체적분쟁해결방법의 하나로서 성문법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또한 관영 및 비관영의 중재기관들이 해사, 교통, 노동, 건설 그리고 클레임사건들과 같은 특정분야의 중재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특히 국제무역분쟁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1953년 상설중재법정으로 일본국제상사중재협회가 창설되었으며 현재 이 협회는 국제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법정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중재는 조정과 같은 소송대체적분쟁해결방법과 비교하여 매우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국제무역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국제상사중재사건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¹⁵⁾

일본국제상사중재협회의 중재규칙은 여러면에서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규칙과 다른 주요국가의 중재규칙과 일치한다.

4. 한국의 무역분쟁처리제도

한국에서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화해를 비롯하여 알선, 조정, 중재 및 소송 등의 방법이 이용된다.

한국은 1962년부터 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출주도형으로 추진하면서 무역량이 급증하고 무역클레임도 증가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와 상공업계가 상사중재의 제도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당시 상공부는 수출종합시책의 일환으로 1965년에는 대외신용도의 향상을 위하여 무역법을 개정하여 상사중재제도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사이에서 벌어진 상사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면서 국내기업의 대외신용도를 높이고 수출을 원만하게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신력있는 중재기관이 필요하게 되어 1966년 3월 16일 중재법의 제정에 이어 1966년 3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내에 국제상사중재위원회를 설립하고 중재사건처리 등 상사중재업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국제상

14) 森井 清, 「貿易클레임과 對策」, 日本經濟新聞社, 1972, p.85.

15) Yoshikazu Takaish,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Japa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Forum 1994*, 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1994, p.57.

사중재위원회는 그후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협회로 독립하고 협회는 다시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확대, 개편하여 변경되었다.

한국 무역관리의 기본법의 하나인 대외무역법에서는 무역거래자는 그 상호간이나 교역상대국의 무역거래자와 물품의 수출, 수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분쟁의 해결을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제41조 제1항)고 하고 해당장관은 위 규정에 의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무역거래자에게 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동조 제3항참조)고 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이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조합, 수입조합 기타 수출 수입과 관련된 기관이 교역상대국의 무역거래자 및 무역분쟁해결기관의 장으로부터 무역분쟁의 신고를 받거나 업무수행상 이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장관은 그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조정 또는 알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대외무역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이와 더불어 선적전검사와 관련하여 수출자와 선적전검사기관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42조 제2항) 분쟁에 관한 중재를 담당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립적인 중재기관을 설치할수 있도록 하였다.(동조 제3항)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04조제1항에서는 선적전검사중재기관으로는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Ⅲ. 중국, 대만, 일본, 한국 상사중재의 제도화

1. 중국상사중재의 제도화

(1) 중국상사중재의 법제화

중재제도는 구미등 선진국에서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으나 중국은 청나라 말부터 시작되었다.¹⁶⁾ 중재법을 포함한 중국의 법률은 대륙법제도, 특히 독

일법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¹⁷⁾

중국인민공화국성립이전에는 중국에 중재법이나 독립적인 중재기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한 후 법제가 미비한 상태에서 사회조직간에 발생하는 경제계약분쟁을 업무주관부문에서 중재하였으며 중국정부는 대외무역 촉진에 힘쓰는 한편 대외무역에 있어서 중재의 효용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먼저 대외무역에서 발생할 분쟁을 처리할 섭외중재제도를 갖추기 시작하였고 국내중재제도는 그후 80년대에 들어와 마련되기 시작하였다.¹⁸⁾

1954년 5월 6일 정무원(현 국무원)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 대외무역중재위원회를 설치하는 결정을 하고 1956년 대외무역중재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동년 3월 3일 대외무역중재위원회 중재절차 임시규칙을 제정하였다. 1984년 4월 이 중재위원회는 처음으로 심수에 파출기구를 설립하였다. 1988년 6월 21일에는 국무원에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외경제위원회를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로 개칭하고 1988년 8월 12일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중재규칙과 중국해사중재위원회 중재규칙을 가결하여 섭외경제무역 및 해상상의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¹⁹⁾

또한 중국은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 국제상사중재모범법을 참조하여 중재법을 제정하고 1984년 8월 31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 통과를 거쳐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국내중재는 80년대에 들어와 다양하게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1981년 12월 31일에는 전인대 제5기 제4차 회의에서 중국인민공화국경제계약법이 통과되어 경제계약분쟁의 조정과 중재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1983년 8월 22일에는 국무원이 중화인민공화국경제계약중재조례를 공포하고 또한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경제계약중재위원회판안규칙을 제정하여 국내경제계약중재제도가 확립되었다.

그밖에도 1986년 7월 12일에는 국무원의 노동분쟁처리잠정규정에 의하여 노동분쟁기구를 설립하였고 1987년 7월 31일에는 국영기업노동분쟁처리잠정규정을 공포하였다. 또한 1991년 1월 21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공포한 기술계약중재기구관리시규정에 따른 기술계약중재가 있다.

16) 王令麟, “我國仲裁制度的回顧與展望”, 「飛躍中的我國仲裁制度」, 力霸文化傳播, 1995, p.22.

17) 唐厚志, “中國的 國際商事仲裁 및 調停制度”, 「韓中日國際仲裁심포지움」, 大韓商事仲裁院, 1993. p1.

18) 손한기. 전계논문, p.89~90.

19) 陳桂明, 前揭書, p.182.

이와 같이 중국중재제도는 국내중재제도와 섭외중재제도로 구분되고 국내중재에는 경제계약중재, 노동중재, 기술계약중재, 소비중재, 저작권중재, 부동산중재등이 있고 섭외중재에는 국제경제무역중재와 해상중재가 있다. 중재관할권에 따라 중재합의에 의한 중재와 행정권에 의한 중재로 구별되고 전자에는 기술계약중재, 대외경제무역중재, 해상중재 등이 있고 후자에는 경제계약중재, 노동중재 등이 있다. 행정중재는 국가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중재이며 엄격히 말하면 중재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특수한 행정사법의 일종이다.²⁰⁾

섭외중재제도의 발전을 보면 1978년 이후 중국은 대외개방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1980년 2월 국무원에서 대외무역중재위원회를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더욱더 광범위하게 분쟁을 취급하게 되었다.

중국의 중재관계입법은 비교적 분산되어 있고 중재제도는 중재관계법규에 내포되어 있다. 그 법규로는 ① 중화인민공화국경제계약법 ② 중화인민공화국경제계약중재조례 ③ 중화인민공화국섭외경제계약법 ④ 중화인민공화국기술계약법 ⑤ 중화인민공화국기술계약중재조례 ⑥ 국영기업노동쟁의처리잠행규정 ⑦ 국영기업노동계약제시행잠행규정 ⑧ 국영기업사퇴위직공잠행규정 ⑨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 ⑩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중재규칙 ⑪ 중국해사중재위원회중재규칙 ⑫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⑬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 등²¹⁾이다.

이 외에 중재에 관한 지방법규도 있다. 예를 들면 성(省), 자치구, 직할시에서 공포한 소비분쟁중재방법 등도 지방중재입법으로 중국중재제도의 한 부분이다.

특히 중국은 국제상사중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법과 규정을 공포하였다.²²⁾

- ① 국제무역촉진을 위한 대외무역중재위원회설치에 대한 중국정부국무원결정 (1954년)
- ② 중국과 외국합작투자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법률 (1979년)
- ③ 외국업체와의 협력에 의한 중화인민공화국 연안석유자원개발규정 (1982년)
- ④ 민사소송(재판을 위한)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법 (1982년)
- ⑤ 중국외국합작투자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시행규정 (1983년)
- ⑥ 외국기업관련중화인민공화국경제계약법 (1985년)
- ⑦ 중국과 외국간계약상 합작투자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법률 (1988년)

20) 陳桂明, 上揭書, p.11.

21) 王令麟, 前揭書, p.255. 陳桂明, 上揭書, p.185~186. 참조

22) 한국무역협회, 전게서, p.41~42.

⑧ 외국인소유기업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법률 (1986년)

⑨ 1991년개정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1991년)

중국정부는 1994. 8. 31.중재에 관한 법률을 처음으로 입법하여 중재법(The Arbitra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을 만들었고 1995. 9. 1부터 시행하였다. 이 중재법은 중국에서의 모든형태의 중재와 특별히 국제중재에 적용되어야 할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²³⁾

(2). 중국의 상사중재기구

1) 국제중재기구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는 경제 내지 상사문제에 관하여 발생하는 외국관련분쟁의 중재사건을 담당하는 중국에서 유일한 국제상사중재기구이며 심천경제특구와 상해에 소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회의 중재인단은 291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며 21개국 88명의 외국중재인이 포함되어 있다. 위원회는 1990년 238건, 91년 274건, 92년 267건, 93년 504건 그리고 94년(11월말까지) 600건의 국제사건을 취급하였다.²⁴⁾

전통적으로 중국에서의 국제중재에 관한 중재기관과 법적근거는 국내중재의 그것과 상이하였다.²⁵⁾

제2차세계대전이후 미국은 중국의 대외무역을 통제하게 되었다. 미국은 자국의 정치, 경제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 국무성에서 제의하여 미국중재협회와 중국국민당정부는 공동으로 중미상사연합중재위원회를 설립하고 중재규칙을 제정하였다.

중미간 협의에 의해 중미간 발생한 무역분쟁은 모두 이 연합중재위원회에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하여야 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원 26명중 20명이 미국인이

23) 김연호, "중국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의중재절차개설", 「중재」, 제285호, 1997. p.17.

24) Tang Houzhi, "Commercial Arbitration In China,"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Forum 1994*, 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1994, p.69.

25) 김연호, 전계논문, p.17.

고 중국인은 6명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미국인의 조정아래 설립한 중재기구와 제정된 중재규칙은 미국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재기구와 중재규칙은 반(半)식민지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⁶⁾

1956년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 의하여 대외무역중재위원회(FTAC)가 설립되었다.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무역, 상업, 공업, 농업, 운송, 보험 및 법률 등의 분야에서 저명인사, 전문가 등 21명의 위원을 선출하여 대외무역중재위원회 제1기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런 위원회의 위원들이 중재인을 겸하게 되었다.²⁷⁾

1970년대말부터 시작된 개혁개방정책에 따른 환경변화에 부응하기위하여 1980년 2월 22일 국무원에 의하여 동 위원회는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FETAC)로 개칭되고 업무범위도 확대되었다.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는 1988년 6월 21일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로 바뀌게 되었다.

한편 중국해사중재위원회(The China Maritime Arbitration Commission, CIMAC)는 해상 또는 선박충돌, 선박상호구조,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 등을 중재한다. 해사중재위원회에는 약 70명의 중재인이 있다.²⁸⁾

1958년 11월 21일 국무원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안에 해사중재위원회를 설치하는 결정을 내려 해사중재위원회를 설립하고 1959년 1월 8일에는 해사중재위원회 중재절차 임시규칙을 제정하였다.²⁹⁾ 1988년 8월 12일 국무원의 허가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해사중재위원회는 중국해사중재위원회로 개칭되었다.³⁰⁾

2) 국내중재기구

중국은 국내중재에 관한 다른 법과 기구를 갖고 있다.³¹⁾

중국의 국내중재, 즉 외국관련중재 (Foreign-Related)가 아닌 경우에는 모두 중재법에 의하여 각 주, 성정부가 중재기관을 설치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고 통일된 절차규칙과 조직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중국중재법(제10조)에 의하면 중재위원회는 직할시, 성, 자치구인민정부소재지

26) 王存學, 前掲書, p.83.

27) 陶春明.王生長編, 前掲書, p.2.

28) 박상수, 「중국의 대외무역관리제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1994, p.160.

29) 손한기, 전계논문, p.90.

30) 陳桂明, 前掲書, p.182.

31) 唐厚志, 前掲論文, p.6.

시에 설립할수 있으며 상사중재위원회는 시 인민정부조직의 관련부문과 상회가 통일적으로 설립한다. 중재위원회는 행정기관에서 독립된 것이며 행정기관과 예속관계가 아니고 (제14조) 사회단체법인으로 중국중재협회의 회원이다. 중국중재협회는 중재위원회의 자율성조직이고 중재위원회나 중재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감독한다.(제15조)

새로이 설치되는 모든 중재기관은 각 정부법무부에 등록하여야 하고 비정부조직인 중국중재협회(The China Arbitration Association)의 일원으로 가입하게 된다.³²⁾

중재기구는 인민법원으로부터 두 가지 방법으로 감독을 받는다. 그 하나는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제소에 따라 다시 재판하거나 불복제소가 없는 경우는 확정된 판정의 집행절차를 통하여 감독을 받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중재판정이 있는 사건을 다시 재판하지는 못하고 집행절차를 통하여만 감독을 받는 방법중 하나에 의하여 인민법원은 중재기구의 중재활동을 감독하게 된다. 전자의 방법과 같이 중재판정이 있는 후에도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불복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既裁又審制度라고 하고 후자와 같이 중재판정의 중국성이 보장된 제도를 或裁或審制度라고 한다.³³⁾

2. 대만상사중재의 제도화

(1) 대만상사중재의 법제화

대만에는 1961년 1월 20일 민간에서 필요하여 정부에 청원, 제정하여 중재제도의 새로운 역사를 개막한 상무중재조례가 있다. 이 조례는 국내외 경제발전에 따라 1982년 6월 11일과 1986년 12월 26일 2차례 개정하였다. 그 외 1978년 6월 28일 반포한 상무중재협회 조해섭외무역분쟁절차 및 비용규칙과 1989년 6월 22일 중화민국상무중재협회를 통하여 법무부의 허가를 받은 중화민국상무중재협회중재절차실행방법이 있어 현행중재제도는 체계상으로 완비되어 있다.³⁴⁾

연혁적으로 보면 1913년 전 북경정부가 반포한 商事公斷處章程과 1921년의 민

32) 김연호, 전계논문. p.19.

33) 손한기, 전계논문, p.93.

34) 高瑞錚, 前揭論文, p.12참조

事公斷暫行條例는 정부가 대만에 이주한 후에도 적용되었으나 큰 역할은 하지 못하였다. 1961년에 이르러서야 민간에서 필요하여 정부에 청원한 후 이 잠정조례를 수정하여 상무중재조례를 반포하고 중재제도의 새로운 역사를 개막하게 되었다.

(2) 대만의 중재기구

中華民國商務仲裁協會는 중재, 조정, 중재인관리 등을 위해 1956년에 설립된 대만의 유일한 상사분쟁처리전문기관이다. 상무중재협회는 공익성을 띤 사회단체³⁵⁾로서 중재사건수입, 회비, 정부보조금(1995년부터 중단)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만지역의 중재사건에 대해서는 상무중재협회에서 대부분 처리하고 있으며 중재건수는 많지 않다. 1980년대 상무중재협회가 취급한 중재건은 연평균 20여건이고 1990년 이후 두 배 이상 성장하였으며 연 80건 이상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섭외중재건의 비중은 매우 적어 1991년에는 16%를 차지하고 1992년에는 12%에 불과하였다.³⁶⁾

3. 일본상사중재의 제도화

(1) 일본상사중재의 법제화

일본에 있어서 중재제도의 시초는 明治民事訴訟法이전 그 전시대인 德川時代에서부터라고 하기도 하나 이는 사회사실로서 본 경우의 중재 그 자체로서 徳川時代の 五人組에서 이루어진 内濟-특히 개인간의 민사분쟁에 대해 은밀히 서로 해결한다는 것을 가르켜 말하는 것으로³⁷⁾ 이것은 조정적인 색채가 농후한 일종의 화해제도로서³⁸⁾ 서구의 중재와는 다르고 명치민사소송법상의 중재편과의 관련도 없는 중재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徳川시대의 내제제도를 이어받아 명치초기에는 프랑스의 조정제도를 본받은

35) 王令麟, 前掲論文, p.31.

36) 李念祖, “中華民國商務仲裁協會在涉外仲裁事務上的功能”, 「飛躍中的我國仲裁制度」, 力霸文化傳播, 1995, p.108~109.

37) 김상수, “일본에 있어서의 중재제도의 현황과 전망”, 「중재학회지」 제2권, 한국중재학회, 1992, p.58.

38) 森井 清, 前掲書, p.129.

勸解制度가 채택되어 명치17년에는 勸解略則이 제정되고 권해사건을 취급하는 치안재판소가 21개소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제도는 명치 23년 민사소송법의 시행에 의해서 和解와 仲裁制度에 대신되고 그 이후 폐지되었다.³⁹⁾

일본에 있어서 서구형 근대중재제도의 도입은 명치민사소송법의 중재편의 제정에 근거한다. 즉 일본근대중재절차의 법적 기초는 1877년 독일민사소송법을 계수하여 1890년 4월 21일에 처음 제정한 일본 민사소송법이라 할 수 있다.⁴⁰⁾

중재법은 동 법에서 중재절차란 제목으로 중재계약의 유효성, 중재인선정, 중재절차, 중재판정의 효력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일본의 중재기구

일본의 중재는 거의 대부분 상설중재기관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임시중재에 의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일본의 상설중재기관은 공적(행정형)중재기관과 사적(민간형)중재기관으로 구별할 수 있다.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는 공해등 조정위원회를 비롯하여 중앙노동위원회 및 중앙건설공사분쟁심사회가 있다. 또한 후자에 속하는 기관으로서는 국제상사중재협회를 비롯하여 일본해운집회소, 교통사고분쟁처리센터, 제2동경변호사회중재센터가 있다.

국제상사중재협회(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의 설립은 1948년 6월 패전후 전국무역업자대회가 동경과 요코하마에서 개최되고 민간무역의 재개를 맞이하여 클레임처리기관의의 문제가 중요결의의 하나로 채택되고 9월에는 일본상공회의소총회에서 국제상사중재정비에 관한 의결이 채택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수 있다.

그무렵 미국중재협회로부터 일본상공회의소에 대하여 일미합동중재위원회의 설치와 합동중재약관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지고 재일미국상업회의소의 협력으로 1949년 9월에는 미국중재협회와 일본상공회의소간에 일미중재위원회의 설치를 합의하였다.

1949년 12월 1일부터 수출이, 1950년부터 수입이 민간에서 이행됨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중재기관을 정비할 필요가 대두되어 일본상공회의소(전국상공회의소연

39) 森井 清, 上掲書, p.130.

40) Teruo Doi, "Japan", *International Handbook on Commercial Arbitration*,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90, p.1.

합체)가 중심이 되어서 경제단체연합회, 일본무역회, 일본산업협회의, 중소기업연맹, 전국금융단체협의회 등이 발기인이 되어서 1950년 3월 14일 국제상사중재위원회의 창립총회가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서 일미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 기타 사업내용을 그대로 인계받는 형식으로 일본측중재기관의 모체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⁴¹⁾ 위원회는 그 후 1953년 8월에 사단법인 국제상사중재협회로 독립,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와같이 국제상사중재협회는 설립당초부터 미국중재협회의 지도와 원조를 받았다.

국제상사중재협회의 업무에는 중재, 조정, 국외중재기구와의 교류 및 합작, 중재인 관리, 국제중재세미나의 조직 및 참가, 국제상사중재의 연구 및 중재잡지의 출판, 상사분쟁해결경험의 소개 등이 있으며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중재규칙에 따라 기구의 위임 및 중재인의 파견업무를 담당한다. 협회는 동경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오사카, 고베, 나고야, 요코하마에 지역분회를 두고 있으며⁴²⁾ 본부와 분회에서는 중재인명단을 비치하고 있다. 분쟁당사자들은 어느 곳이나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日本海運集會所는 戰前 일본의 유일한 상설중재기관으로⁴³⁾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상설중재기관이다.⁴⁴⁾ 일본해운집회소는 런던에 있는 발틱해운집회소를 모델로 1921년에 설립한 神戸海運集會所가 그 전신이며 1926년에는 해사분쟁전문상설기구로서 중재부가 창설되었다. 그후 1933년에는 위 집회소의 업무가 널리 해운관련업계의 발전에 보탬이 된다는 점에서 주식회사 신호해운집회소를 해산하고 공익법인으로서 사단법인 일본해운집회소가 발족되었으며 분쟁처리방식은 중재(조정포함), 감정, 증명, 지도조언, 상담, 알선 등이 있다.⁴⁵⁾

이 집회소의 중재건수는 국제상사중재협회의 그 것보다 많은 편이다.

제2동경변호사회 중재센터는 시민의 소액분쟁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신속공정하게 중재하는 분쟁처리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990년 3월에 설립되었다. 이 센터는 상담, 중재, 화해, 알선에 의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며 절차의 간소화와 비용의 절감에 힘쓰고 있으며 중재는 법률상담센터의 상담소에서 중재에 적합한 사건에 대해 중재의 신청을 권유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센터의 중재건수

41) 森井 清, 前掲書, p.134.

42) Teruo Doi, op.cit., p.3., 陶春明 王生長, 前掲書, p.336. 참조.

43) 森井 清, 前掲書, p.133.

44) Teruo Doi, op.cit., p.1~2.

45) 森井 清, 前掲書, p.133., 김상수, 전계논문, p.70. 참조

는 설립한지 3년도 안된사이에 200건을 초과하여 타 중재기관에 비해 성공적이라 평가되고 있다. 성공이유로서는 법률상담과의 연계에 수반하여 적합한 사건이 가능한 점, 신청서 등의 구체화, 중재에 관한 안내서나 중재합의의 성립에 노력하는 점 등이 제시된다.⁴⁶⁾

교통사고분쟁처리센타는 1974년 2월 교통사고분쟁의 처리를 위해 발족된 교통사고중재위원회가 1978년 3월 조직을 강화하고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것이다. 이 센타는 중립공정한 입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본부이외에 각 고등재판소 소재도시에 지부가 설치되어 있다.

업무규정에 따라 상담, 알선, 조정, 중재라는 분쟁처리방식을 취하고 있다.⁴⁷⁾

공해등 조정위원회는 국가행정조직법에 의해 설립된 총리부의 外局이며 이 위원회의 분쟁처리방식은 알선, 조정, 중재, 고정처리 등이며 절차규정은 공해분쟁처리법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976년 3월 1일 노동성의 外國으로 창설되었으며 합의제의 행정위원회로 각 지방에도 하나의 지방노동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분쟁처리방식은 재심사, 알선, 조정, 중재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건설공사분쟁심사회는 1956년 건설업법의 개정에 의해 동 법 제25조에 기하여 설치된 건설성의 부속기관으로 각 지방에 하나씩 지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분쟁처리방식은 알선, 조정, 중재, 상담이다.⁴⁸⁾

4. 한국상사중재의 제도화

(1) 한국상사중재의 법제화

한국에서는 고조선때부터 사적분쟁을 법에 호소하여 해결하지않고 부족 또는 마을 공동체의 풍습을 존중하면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덕적제재에 따라 자치적으로 규율하는, 사회현실로서의 중재 또는 조정을 우선하는 전통이 확립되어 있었다. 한국의 조정우선사상이나 전통의 뿌리는 犯禁8條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⁴⁹⁾

46) 김상수, 전계논문, p.68~69.

47) 김상수, 전계논문, p.67.

48) 김상수, 전계논문, p.66.

49) 대한상사중재원, 「상사중재30년사」, 1996. p.39.

한국에서 중재가 최초로 법의 보호아래 제도화된 것은 1912년 조선민사령 제1조 13호에 따라 일본민사소송법이 의용된 때부터이다. 이 조선민사령은 8.15해방 후에는 군정법령 제21호에 의하여 대한민국독립후에도 그 효력을 지속하여 왔기 때문에 일본민사소송법제8편에 있던 중재절차편도 그 효력을 지속하게 되었다.

한편 1957년 10월 7일에는 중재와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있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조약은 제5조에서 양국의 회사나 국민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지위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5조 제2항에서는 그러한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중재합의의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그에 따라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판정의 집행을 상호승인하기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한미간에 있어서는 외국중재판정에 대하여 집행을 인정할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당시 우리 나라의 중재제도는 실제로 한 번도 이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1960년 신 민사소송법제정시에는 중재절차부분은 삭제하고 노동쟁의에 대비하여 노동쟁의조정법에서 중재제도를 남겨놓았을 뿐이었다. 그리하여 1966년 중재법이 제정될 때까지 우리 나라에는 상사중재의 법적 근거는 없게 되었다.⁵⁰⁾ 한국의 중재법은 수출주도형경제개발정책에 따라 수출이 급증하면서 무역클레임도 증가하게 되고 그 해결과 대외신용도의 향상을 위하여 정부와 상공업체가 중재제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됨에 따라 1966년 3월 16일 중재법이 제정, 공포되게 되었다.

한국에서 상사중재가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은 중재법의 제정에 뒤이어 대한상공회의소가 1966년 10월 13일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 대한상공회의소 상사중재규칙을 제정운용하면서부터 였다.⁵¹⁾ 대한상공회의소 국제상사중재위원회는 상사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사건을 처리하게 되었다.

(2) 한국의 중재기구

한국의 중재법제정과 더불어 상사중재업무를 관장할 상사중재기구로서 대한상공회의소내에 부설기구로서 국제상사중재위원회가 1966년 3월 22일 창설되었다. 동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정하여 동년 10월 13일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

50) 최장호, "우리나라 상사중재의 제도화와 학문적인식", 「중재」 제281호, 대한상사중재원, 1996, p.30~31.

51) 대한상사중재원, 전게서, p.41.

시행한 상사중재규칙에 의거하여 중재사건을 처리하였으나 중재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 및 업무량의 증가로 1970년 3월 21일 당시 상공부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협회로 독립, 설치되어 국내 유일의 독립된 상설중재기관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그후 업무량의 증가와 더불어 동 협회는 1980년 8월 29일 정관을 개정하고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사단법인체인 민간단체이나 중재법(제4조 제3항, 제7조 제3항, 18과 부칙으로 동 기관을 당해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으로 봄)과 대외무역법(제42조제3항과 동법시행령제104조에 의해 선적전검사기관으로 지정 등) 등에 의해 공익적성격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관은 정부지원금과 연회비, 중재요금, 한국무역협회의 무역특별회계보조금 등으로 운영되어왔다.

IV. 중국, 대만, 일본, 한국의 상사중재실태

1. 중국의 상사중재실태

(1) 중국의 상사중재사건취급실태

중국이 1983년부터 1991년까지 10년 동안 전국 각급 경제계약중재기관에서 접수한 경제분쟁사건은 110여만 건(분쟁금액 210億元에) 달하였으며 대체적으로 접수사건과 분쟁금액 모두 매년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4-1참조)

1990년 478,147건에서 1991년 18,500건으로 접수건수가 대폭 감소한 것은 새로운 민사소송법의 공포 및 실시로 한쪽당사자의중재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던 것을 양당사자들의 중재합의가 있어야만 중재기관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법적 내용을 개정 한데 기인한다.

또한 과거에 없거나 또는 매우 적은 새로운 유형의 경제계약분쟁사건(통합, 용자 임대, 기업의 위탁경영 및 기업의 임대경영 등 계약분쟁사건)이 갈수록 증가하여 중재기구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⁵²⁾

52) 王存學, 前掲書, p.90~91.

한편 중국의 유일한 국제상사중재기구인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취급한 국제상사중재사건을 보면 1990년에는 238건에 이르렀으나 1991년에는 274건에 달하여 전년대비 15.1%증가하였다. 그러나 1992년에는 267건으로 약간(0.3%) 감소하였다가 1993년에는 486건에 달하였으며 1994년 829, 1995년에는 902건에 달하였다.⁵³⁾ 이것으로 보아 중국에서의 국제상사중재는 대체적으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에서는 국제상사중재가 널리 보급되어 있다⁵⁴⁾고 할 수 있다.

〈표 4-1〉 연도별전국경제합동중재현황

연도	접 수		처 리	
	사 건 수	분쟁금액(萬元)	조 정	중재(증감율%)
1983	14,035	37,796	10,151	686
1984	19,090	83,790	13,704	1,281 (86.7)
1985	35,715	1,108,195	23,878	3,491 (272.5)
1986	30,091	178,464	20,470	3,200 (-8.3)
1987	28,104	153,190	19,998	2,642 (-17.4)
1988	47,052	210,516	35,708	2,871 (8.7)
1989	237,923	335,065	212,031	4,524 (57.6)
1990	478,147	275,814	452,009	3,977 (-121)
1991	185,000	300,500		

주: 처리건수에는 조정, 중재의 확인무효,입건위법,사법기관이송사건등이 있음.

자료: 필자작성(왕존학, 전계서 p.89 이용)

(2) 중국의 중재인 실태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인단은 291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며 그들 중 88명은 싱가포르,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홍콩, 이집트, 스위스, 네덜란드, 카나

53) Tang Houzhi, Op.cit., p.69, 王存學, 「中國經濟仲裁和訴訟, 同心出版社」, 1997, p.229. 참조.

54) 唐厚志, 前揭論文, p.6.

다,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오스트랄리아, 독일, 러시아, 말레지아, 태국, 나이지리아를 포함하는 21개의 다른 나라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다.⁵⁵⁾

1988년 이후에는 과거 겸직이었던 중재위원과 중재인을 분리하여 중재위원은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심리는 중재인이 하게 되었다.⁵⁶⁾

(3) 중국의 중재국제협력

1) 다국간 협약

중국은 다국간중재협약인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국제협약(1958년)에 1987년 4월에 정식으로 가입하여(1987. 4. 22.발효) 타국의 중재판정이 중국에서도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중국법원은 규정하고 있다.

2) 양자간 중재협정

중국은 덴마크, 이집트, EEC, 서독, 핀란드, 프랑스, 일본, 시리아, 필리핀, 미국, 소련 및 상호경제원조위원회의 다수국과 쌍무중재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⁵⁷⁾ 한국과는 1992년 12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가 대한상사중재원과 한중상사중재협정을 체결한바 있다.

동협정에서는 제1조에서 분쟁발생시 분쟁해결장소는 당사자의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신청인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만의 상사중재실태

(1) 대만의 상사중재사건취급실태

대만상무중재협회가 접수한 중재사건은 1976년에 7건(섭외건 1건포함), 80년 36건(섭외건 4건), 81년에는 41건(섭외건 4건), 82년에는 81건, 83년에는 89건(섭

55) Tang Houzhi, op.cit., p.69.

56) 손한기, 전계논문, p.108.

57) 변재훈, “중국의 중재제도”, 「중재」 제22호, 대한상사중재원, p.24, 한국무역협회, 전계서, p.203. 참조.

외건 11건)이다.⁵⁸⁾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90년 24건, 91년 36건, 92년 41건, 93년 80건, 94년 89건을 접수하여(표 4-2 참조) 중재사건은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중涉外사건의 비중은 매우 적어 1991년에는 16%, 92년에는 12%를 차지하는데 불과하였다.⁵⁹⁾

(2) 대만의 중재인실태

대만의 중재인은 1990년 234명에서 91년 290명, 92년 409명, 93년 511명, 94년 644명으로 연평균 275%성장하였다. 1994년도 644명의 중재인을 분류하여 보면 변호사가 347명으로 제일 많고 기사(技師) 142명, 건축사 43명, 회계사 35명, 기업인 등 32명, 학자 18명 기타로 구성되었으며 미국인 7명, 오스트리아인 2명이었다.⁶⁰⁾

〈표 4-2〉 대만의 중재사건

연도 내용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구접수건수	3	1	1	4	12	8	12	17	25	56
신접수건수	3	2	7	14	11	24	36	41	80	89
합 계	6	3	8	18	23	32	48	58	105	145
중재판정	5	1	4	5	12	17	28	27	38	61
중재화해	0	1	0	1	0	1	0	1	4	2
철회	0	0	0	0	4	2	3	5	7	9
중재절차중	1	1	4	12	7	12	17	25	56	73

자료 : 중화민국법무부, 「상무중재제도연토회실록(2)」, 전장기업유한공사, 1995, p.108.

(3) 대만의 중재국제협력

1) 다국간협약

58) 高瑞錚, 前掲論文, p.13.

59) 李念祖, 前掲論文(논문), p.109.

60) 王令麟, 「飛躍中的我國仲裁制度」, 易霸文化傳播, p.322.

대만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에 가입하지 못하였다.

그 원인은 1957년당시 UN에서 각국회원국을 소집하여 상호 외국중재판정의 집행문제를 검토하고자 대만도 초청하였지만 그 당시 대만은 중재관련법률이 없었으므로 참석하지 않았다. 몇 년후 정부는 협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입하고자 노력하였으나 UN회원국의 조건제한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⁶¹⁾

2) 양자간 중재협정

중화민국상무중재협회는 세계여러나라중재기구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십년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유럽, 미주, 호주, 아프리카, 아시아주 등 14개국의 중재기구와 2국간중재협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상무중재협회는 국제적인 중재회의 또는 관련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⁶²⁾

한국과는 1978년 5월 10일 중화민국상무중재협회(The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The Republic of China)와 대한상사중재원간에 중재협정을 체결한바 있다.

3. 일본의 상사중재실태

(1) 일본의 상사중재사건취급실태

일본에서의 중재는 조정과 같이 대중적이지는 못하나 민사분쟁의 반수이상은 재판이외의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다.⁶³⁾

일본국제상사중재협회가 5년간 취급, 처리한 국제중재신청사건은 <표 4-3>에 서와 같이1989년 8건, 1990년 9건, 1991년 6건, 1992년 6건, 1993년 3건에 불과하였으며 이 협회가 중재판정으로 처리한 중재건은 1990년 1건, 91년 2건, 92년 5건, 93년 4건이었다.

61) 王令麟, 前掲論文, p.31.

62) 高瑞錚, 前掲論文. p.13., 李念祖, 前掲論文, p.110.

63) 김상수, 전계논문. .p61. 참조

〈표 4-3〉 일본국제중재협회의 국제중재사건

연도 \ 사건처리	1989	1990	1991	1992	1993
중재신청	8	9	6	6	3
중재진행	13	16	17	20	15
합계	21	25	23	26	18

자료 : Yoshikazu Takaishi, op. cit., p.58.

(2) 일본의 중재인실태

일본 국제상사중재협회의 중재인은 100명으로 이들을 직업별로 분류하면 변호사가 67명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 기업인이 16명, 교수 15명, 기타 2명 순으로 구성되고 있다. 또한 이들을 국적별로 분류하면 일본인이 94명으로 제일 많고 다음 미국인 3명, 독일인 2명 그리고 뉴질랜드인 1명으로 되어 있다.⁶⁴⁾

(3) 일본의 중재국제협력

1) 다국간협약

일본은 1938년 제네바중재조항에 관한 의정서(1923. 9. 24)에 가입하고 1952년에는 제네바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협약(1927. 9. 26) 그리고 1961년에는 뉴욕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협약(1958. 6. 10), 1967년에는 와싱턴의 국가와 타국민간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1965. 3. 18)에 가입하였다.⁶⁵⁾

일본은 또한 이상의 다국간조약이외에 통상항해조약이라는 二國間條約에 의해서 미국, 에살바돌, 페루, 알젠친, 소련,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영국, 파키스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의 국가와 상호 중재판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⁶⁶⁾

64) Yoshikazu Takaishi, op.cit., p.58.

65) Teruo Doi, op.cit., p.29.

66) 森井 清, 前掲書, p.136. 참조

2) 양자간 중재협정

일본국제상사중재협회는 여러 나라의 중재기관과 적극적인 업무 제휴관계를 맺고 정부간의 조약과는 다른 민간중재기관상호간 합동중재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들 상대방의 중재기관은 미국중재협회, 인도상공회의소연합회, 전(全)쏘상업회의소연맹, 파키스탄상공회의소연합회, 체코슬로바키아상업회의소, 폴란드무역회의소, 루마니아인민공화국상업회의소, 미주상사중재위원회(중남미제국을 커버), 독일중재위원회, 방쿠버 토론토(카나다)상업회의소, 헝가리상업회의소, 스톡홀름상업회의소(스웨덴), 홀란드중재협회, 핀란드중앙상업회의소 등⁶⁷⁾이다.

대한상사중재원(당시 협회)과는 1973년 10월 26일 중재협정을 체결하였다.

4. 한국의 상사중재실태

(1) 한국의 상사중재사건취급실태

한국의 상사중재는 1966년 5월 31일 일본의 회사가 한국의 회사를 상대로 광석의 함량미달, 선적지연 등을 이유로 한 신용장개설담보금몰수에 대한 청구의 중재신청사건이 접수된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1993년 68건, 1994년 72건 1995년 79건에서 1997년에는 133건(국내중재 82건, 국제중재 51건)의 중재사건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 취급되었다.

1996년에 이르러서는 중재접수건수가 100건을 넘어서기 시작하여 1997년에는 전년대비 22%나 133건이나 접수되었다.(〈표 4-4〉 참조)

특히 해운 및 건설분쟁이 급증하기 시작하여 1996년 각각 17건, 11건에서 1997년에는 각각 30건, 16건으로 증가하여 해운 및 건설분야 중재사건이 96년도에는 26%, 97년도에는 35%를 차지하게 되었다.

(2) 한국의 중재인 실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은 1995년 외국인 19명을 포함하여 608명에서 1998년

67) 森井 清, 前掲書, p.135. 참조

에는 외국거주중재인 111명을 포함하여 총 798명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외국거주 중재인이 급증하여 상사중재 및 중재기구의 국제화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거주중재인을 직업별로 분류하면 학계가 187명으로 제일 많고 법조계 186명, 실업계 171명순으로 되어 있으며 이어서 공공단체 87명, 공인회계사 및 변리사 28명, 외국인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국거주중재인은 미국 18명, 일본 15명, 중국 11명, 프랑스 9명 등 25개국 111명으로 이루어 졌다.

〈표 4-4〉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사건

연도 \ 사건	국내중재사건	국제중재사건	합 계
1990	17	19	36
1991	34	17	51
1992	41	30	71
1993	40	28	68
1994	39	33	72
1995	61	18	79
1996	73	36	109
1997	82	51	133

자료: 필자작성 (대한상사중재원, 상사중재 30년사·중재 제287호 참조)

(3) 한국의 중재국제협력

1) 다국간 협약

한국은 중재에 관한 다국간조약인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1973년 5월 9일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2) 양자간 중재협정

대한상사중재원은 1973. 10. 26. 일본국제상사중재협회와 한일중재협정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미국, 대만, 네덜란드, 태국, 인도, 가나, 인도네시아, 덴마크, 형

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탈리아, 폴란드, 중국, 호주, 멕시코, 베트남, 러시아, 싱가포르, 우크라이나, 몽골 등 22개국 22개기관과 중재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또한 1978. 5. 29.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과 중재자료 교환, 중재시설제공 등의 업무협조약정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아·아(亞阿)법률자문위원회 및 쿠알라룸푸르지역중재센터, 카이로지역국제상사중재센터, 스위스중재협회, 독일중재원호주상사분쟁센터, 태국법무부중재사무소, 스웨덴스톡홀름상의중재원, 오스트리아연방상의/오스트리아연방사의 국제중재센터, 스페인중재법원 및 스페인통산해운회의소, 일본해운집회소, 도쿄해사중재위원회, 런던국제중재법원, 태국법무부중재사무소, 남아연방중재인협회, 필리핀분쟁해결센터, 도미니카중재·조정법원, 그리스중재협회 등 16개국 20개 기관과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있다.⁶⁸⁾

V. 맺음말

중국, 대만, 일본, 한국 등 무역비중이 높은 아시아주요4개국의 무역분쟁처리 및 상사중재시스템의 운용실태 등을 비교, 검토하여 볼 때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중국, 대만, 일본, 한국의 상사중재사건을 비교하여 볼 때, 특히 국제상사중재사건에 있어서 중국이 제일 많고 다음이 한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만과 일본의 경우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1994년 829건, 1995년 902건으로 급증하고, 한국 또한 95년 79건, 96년 109건, 97년 133건으로 급증하였다. 일본에서 조정제도는 대단히 많이 이용되고⁶⁹⁾ 있지만 국제상사분쟁해결수단으로서 중재나 조정은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5-1〉 참조)

68)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288호 여름, 1998. p.122~125참조.

69) 송포 성, “한국, 중국, 일본의 국제상사중재제도의 상위점 및 공동분쟁해결방법”, 「한·중·일 국제중재심포지움」, 대한상사중재원, 1993, p.24.

<표 5-1> 중국, 대만, 일본, 한국의 국제중재사건비교

연도 \ 국가	중 국	대 만	일 본	한 국
1990	238	2	9	19
1991	274	4	6	17
1992	267	4	6	30
1993	486	13	3	28

주: 각국의 대표적 국제상사중재기관취급사건(본문 제4장 참조)

일본에서 중재제도가 부진한 것은 덕천시대에서 명치시대에 이르러 관존민비의 풍조아래 경제적자치의 정신이 충분히 고양되지 못하고 그 외에 일본의 상공업자는 경제적으로 힘이 약하고 견고한 자치적조직을 수립할 수 없어 중재제도의 발달을 재촉할 수 있는 자주적정신이 양성되지 못하여 중재제도는 일본에 친근감이 생기지 못한 채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실업계, 범조계에서도 중재제도에 관심이 적었고 거래계약에 중재조항을 둔다는 관행이 수립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⁷⁰⁾

반면 중국에서 국제상사중재사건이 증가되는 첫 번째 이유는 중재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국제경제무역발전의 다양화, 전문화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으며 중재인은 특정분야의 전문가로 실제수요에 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⁷¹⁾

한국에서 상사중재와 국제상사중재사건이 90년대 후반에도 계속 증가되는 것은 무역거래건수의 증가도 무시할 수 없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에 대한 홍보와 계몽, 국제활동의 효과와 국내대학에서의 정규과목교육, 모의상사중재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중국의 근대제도적중재는 대외무역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국제중재에서 시작하여 그 후 국내중재제도가 정비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후 미국은 중국의 대외무역을 통제하게 되고 미국 국무원의 제의와 미국중재협회가 중국의 국민당정부와 공동으로 중미상사연합중재위원회를 설립하고 중재규칙을 제정하여 半植民地의성격을 띤다고 하며 제국주의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정치침략으로 중재제도에 있어서 자본주의 국가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⁷²⁾고 한다.

70) 森井 清, 前掲書, p.131. 참조

71) 王存學, 「中國經濟仲裁和訴訟」, 同心出版社, 1997, p.229. 참조

중국에서는 대부분의 국제계약에서 중재조항을 볼 수 있으며⁷²⁾ 국제상사중재가 널리 보급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당시 상공부의 영향으로 대한상공회의소의 노력으로 무역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제도적장치로서 국내중재이용에 앞서 국제상사중재가 제도화 되었으며 미국의 중재법제가 참고되었다.

일본중재의 제도화는 독일민사소송법을 계수한 일본민사소송법의 제정(1890. 4)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국제상사중재는 전후민간무역의 재개와 그에 따른 전국무역업자대회와 일본상공회의소의 국제상사중재수요대책 그리고 미국중재협회의 제안에 의한 일본상공회의소간의 일미중재위원회의 설치합의(1949. 9)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본국제상사중재협회의 창설(1953년)에는 미국중재협회의 지도와 원조가 크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대만의 경우에는 민간에서 필요하여 정부에 청원하여 상사중재를 법제화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중국과 일본의 국제상사중재제도 도입과 중재기구의 창설에는 미국과 미국중재협회의 영향이 지대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국이 경우에도 미국의 중재제도가 참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중국, 대만, 일본, 한국 상사중재기관의 성격과 기능을 비교하면 중국의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는 1954년 국무원결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직원의 급여도 국가로부터 지급되어 형식상으로는 민간단체이나 실질은 국가기관적성격이 없지 않은 공적성격이 농후한 기관⁷⁴⁾이라 할 수 있다. 대만의 상무중재협회는 무역법 제26조에 “주관기관은 국제무역분쟁을 중재체도로 해결하도록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고 다년간 법무부와 경제부 國貿局의 경비지원⁷⁵⁾을 받는 등 공적성격이 있는 민간기구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도 대외무역법(제41조제4항, 제42조제3항)과 동 시행령제104조와 중재법(제4조제3항, 부칙)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공익적성격의 사단법인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일본국제상사중재협회는 순수한 민간단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중국, 대만, 일본, 한국 상사중재기관(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상무중재협회, 국제상사중재협회,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을 비교(1995년 중심)하면 대만의 중재인이 644명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 한국이 608명(1998년 798명)이며 ,

72) 王存學, 中國經濟仲裁和訴訟實用手冊, 中國發展出版社, 1993, p.1~2. 참조

73) 唐厚 志, 前揭論文, p.6. 참조

74) 송포 성, 전개논문, p.26.

75) 高瑞錚, 前揭論文, p.3. 참조

중국 291명, 일본 1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국적을 분석하면 중국의 경우 외국인의 비중은 전체중재인의 30.2%로 4개국중 제일 높고 다음 일본 6.4%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3.1%, 중국은 1.4%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중국이 제일 국제화와 개방화에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표 5-2〉 참조)

〈표 5-2〉 중국, 대만, 일본, 한국 상사중재기관의 중재인비교

국 가 \ 중재인	자 국 인(%)	외 국 인(%)	합 계
중 국	203 (69.8)	88 (30.2)	291
대 만	635 (98.6)	9 (1.4)	644
일 본	94 (94.0)	6 (6.0)	100
한 국	589 (96.9)	19 (3.1)	608

주: 1995년 중심(자료는 본문 제4장 참조)

다섯째, 중국, 대만, 일본, 한국 모두 국제거래의 확대에 부응하여 국제상사중재제도의 국제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재법제를 새롭게 정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여 중국은 이미 1995. 9. 1부터 UN무역법위원회의 국제상사중재모범법을 반영한 새로운 중재법을 시행하고 있다. 대만도 1961년 공포, 시행하여 1982년과 1986년에 수정한 상무중재조례를 1993년부터 국제상사중재모범법과 영, 미, 불, 독 등 선진국 여러 나라의 중재법규를 참고하여 개정안 작성등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중재법규를 개정하기 위해 국제상사중재모범법과 영, 미, 독, 불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중재법시안을 작성,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또한 1966년에 제정되어 1973년에 1차개정 한바 있는 중재법에 대한 개정논의를 하고 있다. 중국, 대만, 일본 모두 국제상사중재모범법을 수용하는 방향이나 전부수용하지는 않는 방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중재인단구성에 있어서 외국인중재인의 수를 더욱 늘리고 그들의 국적을 보다 다변화하여 국제사회에서의 국제성과, 공정성 그리고 신뢰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중재기관과의 중재협정체결을 확대하고 국제중재기구와의 국제중재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중재가 더욱 많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Each of China, Taiwan, Japan and Korea is in international trade one of the major countries in Asia and has been influenced by the Chinese character culture and the Civil law system.

All these countries have their own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 system for international trade dispute and commercial arbitration mechanism in their countries.

They are making their own effort to internationalize and improve their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Among these countries China enacted a new arbitration law already. At that time Chinese arbitration law was referred to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for internationalization of Chinese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China also internationalized the panel of arbitrators by increasing the foreign arbitrators of the panel of arbitrators of CIETAC.

These measures adopted by China will be the model of dispute resolution and the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in other major countries in Asia.

참 고 문 헌

- 김상수, “일본에있어서중재제도의현황과전망”, 「중재학회지」 제2권, 1992. 12.
- 김연호, “중국대의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의 중재절차개설”, 「중재」 1997. 가을, 제285호, 1997.
- 박상수, 「중국의 대외무역관리제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1994.
- 변재훈, “중국의 중재제도”, 「중재」 1990. 4.
- 손한기, “중국중재제도의 일고찰” 「중재학회지」 제3권, 한국중재학회, 1993.
- 채완병, “자유중국의 무역분쟁과 처리”, 「중재」, 1984. 7.
- 최장호, “우리나라 상사중재의 제도화와 학문적 인식”, 「중재」 제281호, 1996 가을, 1996.
- 대한상사중재원, 「한·중·일 국제심포지움」(I, II), 1993.
- 한국무역협회, 「대중국교역 및 투자안내」, 1994.
- 高瑞鏞, “現行商貿仲裁制度實務運作上之缺失及其改進”, 「商貿仲裁制度研討會實錄」, 中華民國法務部, 1995.
- 陶春明·王生長, 「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 人民中國出版社, 1992.
- 王令麟, 「飛躍中的我國仲裁制度」, 力霸文化傳播, 1995.
- 王存學, 「中國經濟仲裁和訴訟」, 同心出版社, 1997.
- _____, 「中國經濟仲裁和訴訟實用手冊」, 中國發展出版社, 1993.
- 陳桂明, 「仲裁法令」, 중국정법대학출판사, 1992.
- 森井 清, 「グレイムド對策」, 日本經濟新聞社, 1972.
- Tang Houzhi, “Commercial Arbitration In China”,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Forum 1994*, 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1994.
- Teruo Doi, “Japan,” *International handbook on Commercial Arbitration*,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90.
- Yoshikazu Takaish,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Japa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Forum*, 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1994.